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광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7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8. 19.

발의자 : 이광재 · 허영 · 홍영표

윤후덕 · 홍익표 · 윤영찬

김두관 · 김수홍 · 김주영

맹성규 · 오기형 · 박정

이상직 · 문정복 · 양아원영

주철현 · 정필모 · 박홍근

이용우 · 서동용 · 홍성국

임호선 · 김승원 · 남인순

안규백 · 송재호 · 양정숙

김윤덕 · 강선우 · 이성만

정일영 · 김병주 · 이형석

황희 · 이규민 · 강병원

김경만 · 허종식 · 정태호

윤건영 · 이용빈 · 윤준병

권칠승 · 문진석 · 조오섭

김영배 · 이수진 · 황운하

윤재갑 의원(4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디지털 신산업에서 공간정보가 갖는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를 기업들에게 공개 · 제공하여 산업적으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

도록 국가적 차원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함.

하지만 공간정보의 무분별한 유출과 악용을 우려한 공간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공간정보의 공개·활용이 원활하지 않아, 디지털트윈, 자율주행차량,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의 주축이 되는 디지털 신산업 분야들의 성장이 어려움.

또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오래된 보안관리규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공간정보를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등 재정 투자의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전문위원회의 의견 청취,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심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 및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항제3호 등).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“유통과 보호”를 “활용 촉진, 유통 및 보호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6호 중 “유통”을 “공간정보의 유통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「공간정보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,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가 금지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3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국가정보원장”을 “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”으로 한다.

이 경우 보안관리규정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공간정보복지

증진을 감안하여 제정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장에 제35조의2·제35조의3 및 제3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보안심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.

1. 공개가 금지되는 공간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 2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 단서에 규정한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,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35조의3(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·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8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35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

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40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국가공간정보위원회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2. (생략) 3. 공간정보의 <u>유통과 보호</u> 에 관한 사항 4. ~ 6. (생략) ③ ~ ⑦ (생략)	제5조(국가공간정보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활용 촉진, 유통 및 보호</u> ----- 4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6조(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5. (생략) 6.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· 관리 및 <u>유통</u>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7. ~ 9. (생략) ③ ~ ⑤ (생략)	제6조(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<u>공간정보의 유통</u> ----- ----- 7. ~ 9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4조(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4조(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<u>관리기관의 장은 「공간정보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공간정보</u>

사업자 또는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
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, 위치기반 서비스
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가 금지된 공간정보를 제공할
수 있다.

〈신 설〉

② (생 략)

제35조(보안관리) ① 관리기관의
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
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관리하거나
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
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
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
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
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
시행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
제공받은 자는 제35조제1항에
따른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
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<신 설>

안하여 제정 ·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-----

-----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-----.

제35조의2(보안심사) ① 국토교통

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.

1. 공개가 금지되는 공간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2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 단서에 규정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,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35조의3(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

<신 설>

	<p><u>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·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38조의2(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) 제35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u></p>
<p>제40조(별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	<p><u>제40조(별칙) -----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<신 설>

3.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

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
법으로 제35조의3제1항에 따

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